

남 동 구
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 람	기관의 장



제2200호
2026년 1월 12일
월요일

공 고

- 공 고 제 7 2 호

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

기 획 예 산 과 2
- 공 고 제 7 4 호

공인 폐기 공고

민 원 여 권 과 10

회 람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

공 고

남동구 공고 제2026-72호

「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6. 1. 9.

남 동 구 청 장

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- 「돌봄통합지원법」 시행체계 구축, 재난대응강화 등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높은 정책성과를 달성하고자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정원의 총수 조정(안 제2조)
 - (총정원) 1,335명 → 1,347명 (+12)
- 정원관리 기관별·직급별 정원 조정(안 별표 3)
 - (총 계) 1,335명 → 1,347명 (+12)
 - (일반직) 6급 이하 1,251명 → 1,263명 (+12)

3. 입법예고기간 : 2026. 1. 9. ~ 1. 12.(3일간)

- 「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0조에 따라 입법예고기간 단축
 - 단축사유 : 입법내용이 구민의 권리·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신속한 정비 실시

4. 의견제출

이 조례 개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청장(기획예산과장)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사항

※ 의견 보내실 곳

- (우 2158)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(만수동) 남동구청 기획예산과 / ☎ 43-202, FAX 43-209

- 남동구 홈페이지(<https://www.namdong.go.kr/main/news/legislation.jsp>)

5. 참고사항

○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3조

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26년 1월 일
제 출 자 : 남 동 구 청 장

☐ 제안이유

- 「돌봄통합지원법」 시행체계 구축, 재난대응강화 등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높은 정책성과를 달성하고자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

☐ 주요내용

- 정원의 총수 조정(안 제2조)
 - (총정원) 1,335명 → 1,347명 (+12)
- 정원관리 기관별·직급별 정원 조정(안 별표 3)
 - (총 계) 1,335명 → 1,347명 (+12)
 - (일반직) 6급 이하 1,251명 → 1,263명 (+12)

☐ 본 문 : “별첨”☐ 신·구조문대비표 : “별첨”☐ 참고자료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25조
-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29조

남동구 조례 제 호

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남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1,335명”을 “1,347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1,303명”을 “1,315명”으로 한다.

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3]

정원관리 기관별·직급별 정원(제4조 관련)

기관별 직급별		총 계	본 청	의 회 사무국	직 속 기 관	사업소	동
총 계		1,347	-				
정무직 계		1	-				
	구청장	1	1				
일반직 계		1,342	-				
	2급	1	1				
	4급	9	7	1	1		
	5급	69	38	2	8	1	20
	6급 이하 계	1,263	-				
별정직 계		4	-				
	5급 상당	1	1				
	6급 상당 이하 계	3	-				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정원의 총수) 남동구에 두 는 지방공무원의 정원(이하 “정 원”이라 한다)의 총수 <u>1,335명</u> 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	제2조(정원의 총수) ----- ----- ----- <u>1,347명</u> ----- -----.
1. 집행기관 : <u>1,303명</u>	1. ----- <u>1,315명</u>
2. · 3. (생략)	2. · 3. (현행과 같음)

[참고자료]

□ 지방자치법

제125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.

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·자격·보수·복무·신분보장·징계·교육·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.

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.

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경우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,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.

□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제29조(직급별 정원)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

검 토 구 분		유	무
검토사항	1.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. 행정규제, 물가대책위 등 심의 3.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.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. 홍보계획(보도자료) 반영여부 6. 그 밖의 문제점		
부서별 의견			
협의개요	부 서	제출의견	검토내용

공 고

남동구 공고 제2026-74호

공인 폐기 공고

「남동구 공인 조례」 제10조에 따라 공인 폐기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. 1. 12.

남동구청장



- 공인 폐기 사유 : 지하수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공인 폐기
- 공인 폐기일 : 2026. 01. 09.
- 폐기 공인 수 : 폐기 공인 10개
- 폐기 공인 내역

연번	구분	기 관 (부서명)	공인명	인영	규격(cm)
1	폐기 공인	남동구 치수과	남동구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징수관인		2.0cm x 2.0cm
2	폐기 공인	남동구 치수과	남동구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분임징수관인		2.0cm x 2.0cm

연번	구분	기 관 (부서명)	공인명	인영	규격(cm)
3	폐기 공인	남동구 치수과	남동구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재무관인		2.0cm x 2.0cm
4	폐기 공인	남동구 치수과	남동구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분임재무관인		2.0cm x 2.0cm
5	폐기 공인	남동구 치수과	남동구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지출원인		2.0cm x 2.0cm
6	폐기 공인	남동구 치수과	남동구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부채관리관인		2.0cm x 2.0cm
7	폐기 공인	남동구 치수과	남동구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인		1.8cm x 1.8cm
8	폐기 공인	남동구 치수과	남동구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수입금출납원인		1.8cm x 1.8cm

연번	구분	기 관 (부서명)	공인명	인영	규격(cm)
9	폐기 공인	남동구 치수과	남동구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물품출납원인		1.8cm x 1.8cm
10	폐기 공인	남동구 치수과	남동구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채권관리관인		2.0cm x 2.0cm